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2025.3.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1 / 6</b>

## 제 1조 (목적)

1.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이하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우건설은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을 통해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전 및 복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대우건설과 국내외 법인, 지사, 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된다.
2. 대우건설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자재 납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 보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아래 4. 참조)에서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입찰, 수주,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사업 단계에서 「정책」을 적용한다.

### 4.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의 정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은 국내외 생물다양성 또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아래의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IUCN Protected Area Categories)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한다.

#### 1) IUCN Category Ia (완전 자연보전지역, Strict Nature Reserve)

IUCN Category Ia는 특이하거나 대표적인 생태적, 지질적, 물리적 특징이나 생물종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주로 과학적 연구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된다. 이 지역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IUCN Category Ib (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IUCN Category Ib는 자연적 특성과 영향력이 그대로 보존된, 인간의 활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거나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야생원시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2 / 6</b>

3) IUCN Category II (국가보호지역, National Park)

IUCN Category II는 생태계 보호와 위락적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지역으로, 환경과 문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역에서는 자원 채취나 토지 이용을 배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학적 특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IUCN Category III (천연보호구역, Natural Monument)

IUCN Category III는 특별한 자연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연적 특성이나 기념비적 요소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희귀하거나 미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적 특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IUCN Category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IUCN Category IV는 특정 생물종 보호와 서식지 유지를 위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물종의 보호와 서식지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IUCN Category V (자연(해역)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IUCN Category V는 자연경관이나 해역경관을 보호하고, 위락적 이용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보 전하며, 생태적, 문화적, 심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7) IUCN Category VI (자원관리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IUCN Category VI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자원의 활용을 위해 보호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 지역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거버넌스)**

1.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정책」을 최종 승인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담당부서(이하 담  
주식회사 대우건설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3 / 6</b>

당부서)의 중요 계획과 활동을 점검한다. 필요시 중요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를 결의한다.

2. 대표이사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진은 「정책」을 전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3. 담당부서는 「정책」의 제·개정 및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또한 단위 사업장에서의 생물다양성 이행 성과를 취합하고, 중요사안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4.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단위 사업장의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식별하고 상시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호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또한 이에 대한 성과를 담당부서에 전달한다.

#### 제 4조 (원칙 및 방안)

1. 본 「정책」은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등을 참조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업장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호 방안 수립을 검토한다.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서식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생물다양성 순 훼손 방지(NNL, No Net Loss)와 순 영향 증가(NPI, Net Positive Impact)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건설 과정에서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할 경우, 복원 및 재조림 방안을 검토한다.
4. 친환경 건설 기법 적용: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 기법 및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5. 침입 외래종 관리: 사업장은 외래종의 유입 방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존의 생물다양성을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4 / 6</b>

보전할 수 있도록 침입 외래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6.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자원의 채취와 사용에서 지속가능한 원칙을 따르며, 지역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7. 공급망 생물다양성 관리 지원: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및 방안을 공급망의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에게 공유하고,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건설을 통해 전체 공급망이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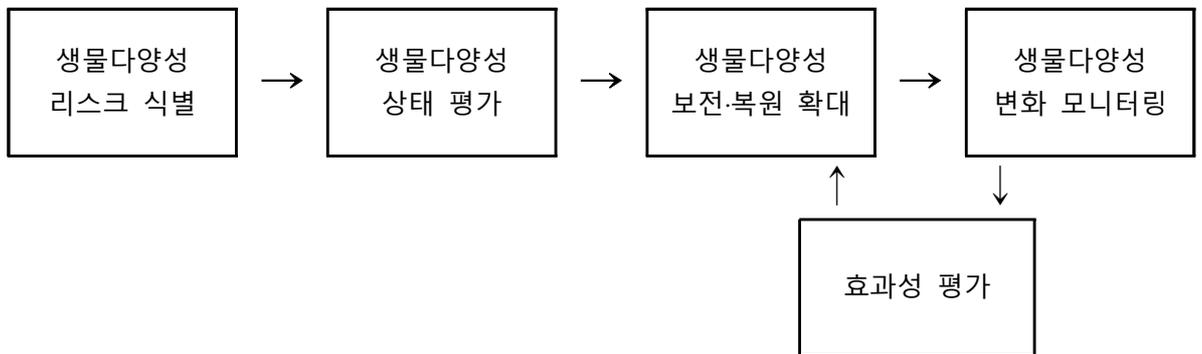
## 제 5조 (점검 및 평가)

1. 상시 점검: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단위 사업장 및 인근 지역의 자연 생태계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
2. 생물다양성 보호 실사 프로세스 운영
  - 1)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호 실사 프로세스 운영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 ①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제2조 4. 참조)에 해당되는 경우
    - ② 법률 및 규제가 요구하는 경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역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 기타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호지역
    - ③ 사업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이해관계자가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피해나 우려를 제기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5 / 6</b>

- 2) 생물다양성 보호 실사 프로세스는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업의 영향을 받는 생물종 및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보전, 복원, 확대하는 계획을 이행하며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 3) 효과성 평가: 생물다양성 보호 조치가 시행된 경우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보호 실사프로세스]**



3. 성과의 보고: 사업 담당부서 혹은 현장은 상시점검 및 생물다양성 보호 성과를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담당부서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 6조 (소통 및 공시)**

1. 대우건설은 「정책」 및 관련 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대우건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정책,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한다.

**제 7조 (정책의 개정)**

1. 「정책」은 사업 환경, 법적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b>대우건설</b>	승 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사회	등록번호	DTMS-SUS-002
	<b>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b>		승 인 일	2025.03.17
			페 이 지	<b>6 / 6</b>

개정한다.

2. 「정책」 개정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혹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